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8. 3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8월 29일 김충옹 의원의 6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1995년 8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5년 8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충옹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03호)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사항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로 함
-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함(안 제2조)
- 의원이 회기중 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1일 50,000원)을 지급함(안 제3조)
- 회기중 지급하던 일비, 여비조항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03호, 95. 7.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던 일비와 여비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로 변경되고, 지급방법이 규정됨에 따라 배치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을 “의정활동비” 등으로 합축하여 조례의 제명을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9조중 “일비와 여비의”를 “의정활동비등의”로 개정하고 제6조(일비지급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일비지급)을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으로 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금액과 지급일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출석일수계산)를 제3조(회의수당지급)으로 개정하여 회의수당의 지급방법과 금액을 규정하였고,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했던 여비가 폐지되므로써 제4조와 제5조의 여비지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1항에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상기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95. 7. 1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의 금액과 지급방법 시기등을 규정하려고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제출년월일: 1995. 8.

제출자: 김충웅의원의 6인 발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제14703호, 1995. 7. 1)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나.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함(안 제2조)
- 다.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당(1일 50,000 원)을 지급함(안 제3조)
- 라. 회기중 지급하던 일비·여비 조항 삭제 개정(안 제6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의수당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중 “회기중”과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일비와 여비의”를 “의정활동비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u>일비와 여비의</u>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u>
제2조(일비지급) ① <u>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u> 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u>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u> 지급한다.	제2조(<u>의정활동비지급</u>) ① <u>의원이 의정자료수집·</u>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u>의정활</u> 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한다. ② <u>의정활동비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u> 에 지급한다.
제3조(<u>출석일수 계산</u>)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3조(<u>회의수당 지급</u>) ① <u>의원이 회기중 의회 회</u> 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u>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u>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2. 3. 6>	제4조(여비지급) <삭제> <삭제>
제5조(여비의 종류) ① <u>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u>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 8. 31>	제5조(여비의 종류) <삭제>
제6조(<u>일비지급기준</u>) 의원에게 지급하는 <u>일비는</u>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94. 8. 3>	제6조(<u>일비지급기준</u>) <삭제>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u>일비와 여비의</u> 지급에 관하여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9조(<u>준용</u>) <u>의정활동비 등의</u>